

# 19.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定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015號, 1993. 12.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9항을 삭제한다.

⑤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해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0조제10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당직사령·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  
경

9. 청사관리용역업체와 지도·감독 및  
신원조회

10. 일반회계중 제2부 분임재무소관 조  
달물품의 구입

제24조제10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

의 승급

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사항중 정원의 증원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  
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  
의 설치 승인(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제10항제24호중 “읍·면·동의 구  
역변경 승인”을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변경 승인”으  
로 한다.

제24조제10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직할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내무부장관이 허가

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직할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특별시·직할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직할시·도에 한정되고 주된 설립 목적을 지역경제개발로 하고 있는 법인의 지도·감독

3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 채발행계획의 승인

제2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 찰청소관 업무상 필요한 용지로의 농지전용의 추천

4.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 능사자격의 취소·정지

제33조제10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 호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전공부를 포함한다)·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인가와 다음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0항제10호나목중 “대한교육연 합회”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하 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법인 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민족문화 추진회·한국2종교과서협회·학습자료협회 및 한국교과서연구소

제33조제10항제11호나목중 “유치원”을 “특수학교·유치원”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3조제10항제33호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6 조”로하고, 동항에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3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

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 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 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 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 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 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 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 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 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 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 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3조제1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자.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증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1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 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 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 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 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 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 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 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 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 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 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 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 제33조제1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 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 제33조제1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재산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

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  
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  
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  
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3조제1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  
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  
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  
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  
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의 의한 기부채  
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  
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  
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  
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  
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  
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  
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  
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  
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3조제1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  
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  
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  
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  
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의 의한 기부채  
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  
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  
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3조제1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재산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의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4조제2항제1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제35조제11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 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종양·종축용오리·종토·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 업무

19.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인 협의(협의 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제3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수산청장은 제4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그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6항제4호 내지 제6호중 “국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

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8호의2 내지 제2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9호를 삭제한다.

2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8의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다)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28의3.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갱신허가

28의4.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다)의 대부기간의 갱신

제42조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제3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제1호 및 제3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4호중 “부녀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

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제4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보건사회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탁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환경청소관)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 다만,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추천
4.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

용의 추천

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6.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에 한한다)의 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결과 협의

제44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국외에 취업하는 선원을 제외한다)의 모집신고 및 모집제한

제47조제6항제1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토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8조제5항제10호중 “그 지정의 취소”를 “그 지정의 해지”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2호중 “별정우체국청사의 같은읍 또는 면의 동·리 안에서의 이전승인”을 “별정우체국청사의 이전승인”으

로 한다.

10의2. 별정우체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제50조중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으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산청장은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포한 수산물과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골판지여상자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원양어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보건사회부소관)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한 의약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 행위등 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 및 과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2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계량기의 제작·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갱신과 등록사항변경 및 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⑥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

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단서 및 제6호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또는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⑦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조(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시행중인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개정이유 □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및 지역시책적 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사무를 민간단체로, 정부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54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19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위탁의 범위를 확대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26개 사무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현정원 범위안 시 • 도의 5급이하 사 무소 • 출장소의 설 치승인(서울특별시 제외)	내무부장관	직할시장 • 도지사	령 제24조제 10항제8호	0.01인	
○ 국민주택건설사업 목적 지방채발행 승인	"	시·도지사	령 제33조제 10항제34호	0.1인	
○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 의 취소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령 제33조제 10항제6호	0.01인	
○ 특수목적 고등학교 의 지정	교육부장관	시·도교육 감	령 제33조제 10항제37호	0.05인	
○ 무주부동산의 취득	"	"	령 제33조제 10항제38호 가목		
○ 국유재산의 기부채 납	"	"	령 제33조제 10항제38호 나목		
○ 국유재산의 등기 및 등록	"	"	령 제33조제 10항제38호 다목		
○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3만 3천제곱미터이상 토지 또는 연간사 용료 1천만원이상 제외)	"	"	령 제33조제 10항제38호 라목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행정재산등의 용도 폐지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령 제33조제 10항 제38호 마목		
○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양여 및 재산 가액 1천만원이상 의 처분제외)	"	"	령 제33조제 10항 제38호 바목		
○ 임종재산의 대부(3 만3천제곱미터이상 토지 또는 연간 대 부료 1천만원이상 제외)	"	"	령 제33조제 10항 제38호 사목		
○ 국유재산의 손해보 험가입	"	"	령 제33조제 10항 제38호 아목		
○ 관세감면대상가축 의 확인	농림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령 제35조제 11항제18호	0.2인	
○ 국토이용계획안 협 의(농업진흥지역밖 의 농지로서 면적 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	령 제35조제 11항제19호	0.6인	
○ 승강기 및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의 등록 및 변경등 록	공업 진흥청장	"	령 부칙 제2 조제2항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승강기제조업의 폐지・휴지 및 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	공업부 전통청장	시・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2항		
○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 •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	"		
○ 승강기 보수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승강기부 품의 수거명령	"	"	"	2인	
○ 검사를 받지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등의 운행정지명령	공업전통청 장	시・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2항		
○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승강기소유자등의 보고 및 검사	"	"	"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승강기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 및 징수	공업진흥총장	"	"		
○ 국유재산인 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건설부장관	"	령 제41조제7항제2호	0.01인	
○ 국유재산인 도로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경신허가	"	"	령 제41조제7항제2호	0.01인	
○ 국유재산인 도로의 대부기간변경	"	"	령 제41조제7항제4호	0.01인	
○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의 실시 및 위탁실시(시설장 제외)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7항	0.3인	

#### 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 23개사무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당직사령·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경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	정부청사기획운영실제2부	령 제20조제10항제8호	0.2인	
○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지도·감독 및 신원신조회	"	"	령 제20조제10항제9호	0.2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일반회계중 제2부 분임재무관소속조 달물품의 구입	정부청사기 회운영실장 부    장	정부청사기 회운영실제2 부    장	령 제20조제 10항제10호	0.1인	
○ 경찰청소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농지 전용의 추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장	령 제25조제 3호	0.03인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관리 • 제 조기사 및 화약취 급기농사자격의 취 소 • 정지	"	"	령 제25조제 4호	0.01인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 • 변경허가, 허 가취소 및 영업정 지	"	"	령 부칙 제2 조제1항	0.06인	
○ 무주부동산의 취득	교육부장관	국 • 공립학 교의장, 소 속행정기관 의장	령 제33조제 11항제13호 가목등		
○ 국유재산의 기부채 납	"	"	령 제33조제 11항제13호 나목등		
○ 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	"	"	령 제33조제 11항제13호 다목등		
○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3만 3천제곱미터이상 토지 또는 연간사 용료 1천만원이상 은 제외)	"	"	령 제33조제 11항제13호 라목등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행정재산등의 용도 폐지	교육부장관	국·공립학교 교의장, 소속행정기관 의장	령 제33조제 11항 제13호 마목등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 가액 1천만원이상의 처분 제외)	"	"	령 제33조제 11항 제13호 바목등		
○ 잡종재산의 대부(3만3천제곱미터이상 토지 또는 연간 임대료 1천만원이상 제외)	"	"	령 제33조제 11항 제13호 사목등		
○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	"	령 제33조제 11항 제13호 아목등		
○ 수입수산동식물수입의 신고수리 및 검사	수산청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령 제37조제 7항		
○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	령 제43조제 2호	1인	
○ 경지지역안에서의 당해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지나 초자일 경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추천	"	"	령 제43조제 3호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의 추천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	령 제43조제4호	0.05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초지 전용의 추천	"	"	령 제43조제5호	0.05인	
○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 평가결과 협의	"	"	령 제43조제6호	0.1인	
○ 국외취업자 모집의 제한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	령 제44조제1항 제5호 나 목	0.1인	900천원
○ 행정재산등(토지 제외)의 용도폐지	해운항만청	지방해운항만청장	령 제47조제6항 제16호 파목	0.2인	
○ 별정우편국지정의 취소	체신부장관	체신청장	령 제48조제5항 제10호의 2	0.02인	

다. 타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 2개 사무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승인	총무처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령 제20조제5항	0.1인	
○ 수입수산동식물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보건사회부장관	수산청장	령 제42조제11항	0.1인	

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 3개 사무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외국과의 공동어업 사업에 의한 수산 물 및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골 판지어적자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물품 의 확인	수산청장	한국원양 어업협회장	령 제56조제 2항	0.5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건설부장관	감정평가업 협회장	령 부칙 제2 조제5항	0.01인	
○ 관세 감면 대상의 약 품의 확인	보건사회부장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	령 제57조제 2호	0.3인	

마.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개선사무 : 19개 사무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소방공무원의 승급	○ 내무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 소방정·소방령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령 제24조제 10항제5호	0.01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변경 승인	○ 내무부장관→시·도지사 위임 • 읍·면·동간의 구역 변경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간 및 읍·면·동간 구역의 변경	령 제24조 제10 항 제 24호	0.01인	
○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 위임 •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 등 5개 법인	• 8 개 법인 (한국대학 법인 협의회 등 3개 법인 추가)	령 제33조 제10 항 제 10호라목	0.01인	
○ 교원자격검정,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 위임 • 유치원, 초·중등 학교 1급 정교사 자격	• 유치원, 초등·특수·중등 학교 1급 정교사 자격	령 제33조제 10 항 제 11 호나목	0.01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교원자격증의 박탈	○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위임 • 복무의무 위반자	• 특수학교 2급 정교 사자격 기준증 제1호 해당자	령 제33조 제10항 제11호 카목	0.01인	
○ 교원자격검정, 교원 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 교원부장관→국립학교의장, 소속행정기관의장 위임 • 특수학교 정교사자격 기준증 제1호 해당자	• 복무의무 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자	령 제33조 제10항 제33호	0.05인	
	○ 교원부장관→국립학교의장, 소속행정기관의장 위임 • 특수학교 정교사자격 기준증 제1호 해당자	• 특수학교 2급 정교 사자격 기준증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해당자	령 제33조 제11항 제6호 카목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교원자격검정, 교원 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 교육부장관→사립의 대학(교),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 위탁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준증 제1호 해당자		령 제51조 제1항 제1호아목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기준증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해당자	0.05인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시행의 허가	○ 농촌진흥청장→시 • 도지사 위임 • 5급 이하 상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령 제36조 제5항제5호 • 전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0.16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초지전용의 추천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위 임 • 도로변 휴 게 소설치, 주택건설 또는 택지 조성을 위 한 사업편 입초지		령 제41조 제7항 제26호	0.01인	
○ 택지개발계획의 승 인 및 고시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위 임 • 30만제곱 미터미만 택지		령 부칙 제2 조 제4항	0.02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고시 및 통지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위 임 • 330만제 곱미터미 만 택지		" • 면적제한 없음	0.02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택지공급의 승인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위 임 • 330만제 곱미터미 만		령 부칙 제2 조제4항 • 면적제한 없음	0.01인	
○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에 대한 선수 금의 승인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위 임 • 330만제 곱미터미 만		"	0.01인	
○ 하천정비기본계획 의 결정·변경·폐 지 또는 취소등의 인가	○ 건설부장 관→시·도 지사위임  • 다른 시 • 도와 연 계되어 있 지 아니하 고 하류에 직 할 하천 이 없는 하천		령 부칙 제2 조제6항 • 직할하천 에 직접 유입되자 아니하는 하천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 의 시행허가, 변경 · 폐지 또는 취소 의 인가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 위 임  • 하천 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다른 시·도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 하고 하류 에 직할 하천이 없는 하천		• 하천 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직 할 하천에 직접 유입 되지 아니 하는 하천	"	0.01인
○ 관리청이 아닌 자 의 하천공사의 시 행허가, 변경 · 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	○ 건설부장 관→시· 도지사 위 임  • 하천 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다른 시·도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 하고 하류 에 직할 하천이 없는 하천		• 하천 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직 할 하천에 직접 유입 되지 아니 하는 하천	"	0.05인

사무명	위임기관	수임기관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보건사회부 장관 → 시·도지사 위임 • 귀녀복지사업 목적의 사단법인	•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사단법인	령 제42조 제7항 제34호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해운항망청장 → 지역해운항망 청장 위임 • 사용·수익	• 사용·수익(사용승인포함)	령 제47조 제6항 제16호 마목	0.1인	
○ 별정우편국 청사의 이전승인	○ 체신부장관 → 체신청장 위임 • 같은 읍면 안에 서의 이전	• 지역 제한 없음	령 제48조 제5항 제12호	0.05인	

〈법제처 제공〉